국민동의청원서

등록일자	2023. 10. 3.
동의기간	2023. 10. 10. ~ 2023. 11. 5. 국민동의 수 50,000
청 원 자	성 명 김우신
제 목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청 원 원 문

[청워의 취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2023년 10월 3일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C3J0M6E1B2P1X0L5B7O2U8T6 V0S2

이 법안을 살펴보면 제102조의6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2조의7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환자·시민단체와 의·약사단체의 지적과 우려가 있어 더욱 숙고되어야 하며, 본회의를 통과하여도 시행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있어야 합니다.

[청원 내용]

보험업계는 개정안으로 소비자들 편의성이 개선되고, 소액 보험금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나 유도진료가 의심될 경우 서류를 낸 주체, 병·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관 금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했으나, 환자·시민단체는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불가피한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해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2005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개한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에서 그치지 않고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을 거쳐 정부보험을 대체 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사적 계약일 뿐인 실손보험은 의료 공급체계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류를 보내는 것이 의료기관-보험사 직접 청구 및 직불제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에서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을 쏘았던 국회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전자적 전송을 요청하도록 사실상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보험사가 강요해 나갈 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경우에 요양기관이따라야만 하고, 요양기관이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보험회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써야만 하기에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계의 14년 숙원인 이 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으며, 민생 법안이라며 성

급해하는 듯한 보도들은 제게 의문점을 더합니다.
예시 기사: https://m.segye.com/view/20231001502313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더욱 숙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통과하여도 시행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안 문제를 해오할 수 있는 우륵 답답을 해 주시기 마십니다.
관련 기사 및 자료: https://upinews.kr/newsView/106559969692202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604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42636